

4. 김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2. 13.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
나. 회부일자 : 2003. 12. 15.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
다. 상정일자 : 2003. 12. 17. 제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
제1차자치행정위원회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 : 세정과장 김원기)

가. 제안이유

○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김제시세감면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·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했던 것을 수익사업인 관계로 도시계획세를 50% 경감으로 조정함.(안 제5조)

○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·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했던 것을 부동산으로 확대하여 감면대상에 포함.(안 제9조 제1항)

- 전용면적 40㎡이하인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·종합토지세·도시계획세를 면제했던 것을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주택용 부동산까지 확대함.(안 제11조)
- 비영리사업자도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여 형평성 유지.(안 제13조)
-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1000분의 3을 감면하던 것을 5년 동안 미분양 상태로 있는 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감면기간을 3년으로 단축 조정함.(안 제14조)
-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·종합토지세·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(재산할)를 5년간 면제하던 것을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50% 경감으로 조정하여 조세 형평성 유지.(안 제15조)
-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·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 및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면제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유도.(안 제25조 제1호 내지 제2호)
-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의 양수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·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 및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50%를 경감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유도.(안 제25조 제3호 내지 제4호)

- 법인 등이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·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%를 감면하고 있으므로,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까지 포함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 유도함.(안 제27조)
-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했던 것을 50% 경감으로 조세 형평성 유지.(안 제2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조례안은,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김제시세감면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검토결과,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특이사항 없음.

5. 토론요지

- 특이사항 없음.

6. 심사결과

- 표결결과, 재적위원 9명중 6명 위원이 참석하여,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.